



## 상담 및 철거지원 문의

구청 (건축과, 건축안전센터)

종로구	2148-2823
중구	3396-5791
용산구	2199-7533
성동구	2286-5639
광진구	450-7735
동대문구	2127-4958
중랑구	2094-2336
성북구	2241-2883
강북구	901-2587
도봉구	2091-3682
노원구	2116-3905
은평구	351-7552
서대문구	330-8972
마포구	3153-6082
양천구	2620-3557
강서구	2600-6005
구로구	860-2391
금천구	2627-2312
영등포구	2670-3698
동작구	820-9120
관악구	879-6431
서초구	2155-6843
강남구	3423-6188
송파구	2147-3088
강동구	3425-7982

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
02-2133-6989, 6990



**위험한 침탑  
안전을 위해  
정비하세요!**



## 교회 침탑 안전점검·철거 지원사업

노후, 구조 위험, 방치된 침탑이 있으신가요?  
강풍, 태풍에 쓰러지는 옥상 교회 침탑 방지를 위해  
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거지원 합니다.





#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신청



## 신청자격

- 교회 첨탑 소유자 · 관리자
- 방치 첨탑이 있는 건물 소유자 · 관리자



## 신청대상

- 교회 첨탑 중 높이 4미터를 초과하며 노후, 방치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
- ※ 십자가만 있는 경우는 제외



## 신청기간

- 21년 7월 ~ 8월



## 점검절차

1. 구청 건축과에 유선 문의
2. 현장방문, 상담 및 신청접수
3. 철거 시행



## 점검비용

무료



## 신청문의

다산콜센터(T: 120) 또는 상담 및 철거지원 문의 참고



## 1차 실태조사

- 조사대상 : 서울 시내 교회 약 7,900개소
- 조사내용 : 교회첨탑 설치 여부 및 크기, 구조 등
- 조사부서 : 구청 건축과

## 2차 안전점검



- 점검목적 : 강풍에 의한 추락사고 예방
- 점검대상 :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첨탑, 또는 기타 노후, 방치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(십자가만 있는 경우는 제외)
- 점 검 반 : 자치구(건축과 또는 안전센터)
- 점검방법 : 건축,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점검
- 점검내용 : 구조안전, 지지구조물, 주요부재 등 확인
- 평가등급
  - A등급 : 성능이 매우 우수한 상태
  - B등급 : 성능이 우수한 상태
  - C등급 :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
  - D등급 : 성능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
  - E등급 : 성능저하가 심각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



## 3차 철거지원

- 신청기간 : 21년 7월 ~ 8월
- 지원대상 : 위험 첨탑, 관리방치(관리자 부재) 첨탑
- 지원내용 : 구청에서 철거 시행
- 지원신청 : 구청(건축과), 유선 문의→현장조사, 접수
- 공사금액 : 4백만원 이내의 철거비용을 시→구 지원
- 지원 우선순위
  1. 안전등급 E등급
  2. 방치첨탑(교회 이전)
  3. 안전등급 D등급(상가에 있는 소규모 교회)

## 자주 묻는 질문 Q&A



### Q1 첨탑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?

높이 4미터 넘는 첨탑은 설치 전에 구청 건축과에 위치에 따라 증축신고 또는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### Q2 첨탑도 정기점검을 하나요?

2020.5.1.「건축물관리법」시행으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첨탑 등 공작물도 함께 정기점검을 하면 됩니다.

### Q3 건축물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나요?

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하고, 이후 3년 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며,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서 실시 합니다.



## 관련 규정

### ✓ 긴급 안전점검 실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0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) 및 시행령 제38조(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등)  
-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점검

### ✓ 안전조치 통보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 제1항(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)  
- 재난관리책임관의 소유자,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통보

### ✓ 처벌규정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78조3(벌칙), 제79조(벌칙)  
-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  
- 긴급안전점검을 거부, 기피, 방해한 자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